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6
----------	----

2018년 9월 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8년 9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가. 제안이유

-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서,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녹색기업의 해외통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위탁사무명 : 녹색산업육성지원

2)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9.1.1 ~ 2021.12.31)

○ 위탁사무

- 녹색산업 네트워크 활성화(그린테크샵, 그린비즈랩, 그린인포랩 등 운영)
- 녹색기업 국내외 판로지원(온라인 기획전, 수출상담회, 사절단파견)
- 기타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무

○ 2019년 소요예산 : 750백만원(민간위탁금)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3)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1.09.30.~'13.12.31. : 1차 위탁관리(2년, 서울산업진흥원(SBA))
- '14.01.01.~'14.12.31. : 2차 위탁관리(1년, 서울산업진흥원(SBA))
- '15.01.01.~'15.12.31. : 3차 위탁관리(1년, 서울산업진흥원(SBA))
- '16.01.01.~'18.12.31. : 4차 위탁관리(3년, 서울산업진흥원(SBA))

4)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녹색산업 육성 지원사무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기대효과

- 전문적인 사무 운영·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3.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제20조

제18조(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 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원 조성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⑤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20조(녹색산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1.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경영, 국내·외 마케팅 지원

2. 산업뉴타운과 연계한 녹색산업 집적화 거점 조성
4.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 거점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찰, 위해요소 제거, 지원 체계 개발·운영 등 체계적 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750백만원('19년도, 민간위탁금)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녹색기업의 해외통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 현황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녹색기업 기술 사업화,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확산과 서울시 녹색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1년 9월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녹색산업지원센터¹⁾’를 설치하여 현재 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를 4차에 거쳐 민간위탁(현 서울산업진흥원(SBA))하고 있음.
- 녹색산업지원센터에서는 3D 프린터 활용 녹색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그린테크샵 운영), 녹색기술 사업화 지원 및 해외통상 현지 시장정보 제공(그린비즈랩 운영), 녹색기술센터(GTC) 녹색기술 정보시스템 활용 국내외 녹색기술 및 산업 트렌드 등 전문정보 제공,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지원(그린인포랩 운영) 등을 통한 녹색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서울태양광엑스포 개최, 녹색기술 수출상담회 및 우수 기술 교류회 개최 등 녹색기술 해외통상 지원

1)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서울시창업지원센터 411호
규 모 : 822㎡(사무실 102, 그린비즈랩 85.3, 그린테크샵 108, 교육실 526)
주요시설 : 사무실, 3D프린터교육실, 그린테크샵 등
인력운영 : 3명

등의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2) 민간위탁의 타당성

- 녹색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녹색기술 해외통상 지원 등의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를 민간영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유연성을 살려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녹색산업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민간위탁 성과보고서²⁾ 반영을 통한 민간위탁 개선 방안 모색

- 동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수탁기관 내 전문조직 미비, 서울태양광엑스포 개최 사무의 부적절 등의 사유로 종합점수가 58.96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을 주문한 바 있음.
- 따라서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서울태양광엑스포³⁾ 개최 등 태양광 산업진흥 업무를 서울에너지공사 등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위탁 사무 내용에서 삭제하고 서울태양광엑스포 개최 예산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2019년도 민간위탁금을 편성⁴⁾한 것은 성과보고서 평가결과를 반영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또한, 현 수탁기관 내 전문조직 미비에 대해서는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이 사업 추진의 전문성 확보에 있는 만큼 향후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시 해당 분야의 전문조직이 구비된 전문성 있는 기관이 선정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⁵⁾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2) 재위탁·재계약 시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사업부서에서 성과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 신설('17년)

3) 태양광 산업 육성 및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 태양광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4) '18년도 민간위탁금 9억원, '19년도 민간위탁금 7억 5천만원(전년 대비 1억 5천만원 감소)

5) 민간위탁 제안요청서에 전문조직 구비 사항 반영 등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동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과 결과 종합점수가 58.96점으로 낮았고 4차까지의 민간위탁 기간이 1~3년으로 제각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수탁자 선정에 앞서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평가방법 등을 재검토해 보고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할 것.

답변 : 지적했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동 민간위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6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내지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서
- 나.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녹색기업의 해외통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녹색산업 육성 지원
-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9.1.1. ~ 2021.12.31.)
 - 위탁사무
 - 녹색산업 네트워크 활성화(그린테크샵, 그린비즈랩, 그린인포랩 등 운영)
 - 녹색기업 국내외 판로지원(온라인 기획전, 수출상담회, 사절단파견)
 - 기타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무
 - 19년 소요예산 : 750백만원(민간위탁금)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내지 제2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1.09.30.~'13.12.31. : 1차 위탁관리(2년, 서울산업진흥원(SBA))
- '14.01.01.~'14.12.31. : 2차 위탁관리(1년, 서울산업진흥원(SBA))
- '15.01.01.~'15.12.31. : 3차 위탁관리(1년, 서울산업진흥원(SBA))
- '16.01.01.~'18.12.31. : 4차 위탁관리(3년, 서울산업진흥원(SBA))

라.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녹색산업 육성 지원사무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기대효과

- 전문적인 사무 운영·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제20조

제18조(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원 조성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⑥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20조(녹색산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경영, 국내·외 마케팅 지원
2. 산업뉴타운과 연계한 녹색산업 집적화 거점 조성
4.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 거점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찰, 위해요소 제거, 지원체계 개발·운영 등 체계적 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750백만원('19년도, 민간위탁금)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고수봉 (☎2133-3556)